

현행	개정안
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: <u>2025년 1월 1일</u></p> <p>6. · 7. (생략)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: <u>2026년 7월 1일</u></p> <p>6. ·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41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</p> <p>제2조(적용례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(이하 “화관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<u>2025년 1월 1일부터</u> 적용한다.</p> <p>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<u>자는</u>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41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</p> <p>제2조(적용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8월 7일</u> ----- -----.</p> <p>제3조(경과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(화관법 제24조 및 제28조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적용일 이전부터 취급한 자를 포함한다)</u>는 ----- -----.</p>
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: <u>2026년 1월 1일</u></p> <p>6. · 7. (생략)</p>	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: <u>2026년 7월 1일</u></p> <p>6. · 7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-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</p> <p>제2조(적용례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(이하 “화관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<u>2025년 1월 1일부터</u> 적용한다.</p> <p>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<u>자는</u>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-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</p> <p>제2조(적용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8월 7일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(경과조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자(화관법 제24조 및 제28조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적용일 이전부터 취급한 자를 포함한다)</u>는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